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0

2018. 12. 14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김기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6일

(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기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
○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위촉해제, 위원장의 직무, 실무협의회, 관계기관 협조 요청,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)

○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구성·운영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상위법령인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'지역인재채용협의체'의 기능, 구성, 회의 등에 관한 사항

을 규정하고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○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, 위촉해제, 위원장의 직무, 실무협의회, 관계기관 협조 요청,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○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10. 23.~'18. 10. 2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구성·운영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없 음"

5. 토 론 요 지 : "없 음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기)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, 이전공공기관의 대표,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3.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
4.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,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.

제5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)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등)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]

제29조의4(지역인재채용협의체)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·도에 협의체(이하 "지역인재채용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한다.

1.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
2.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
3.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(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)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로 하고,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, 이전공공기관의 대표,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,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]

제31조의2(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채용협의체(이하 "지역인 재채용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시·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.